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소장일본주의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45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2. 19.
3. 회 부 일: 2024. 12. 20.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서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 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의 경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장일본주의도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소장에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임(안 제254조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第254條(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狀) ① ~ ⑤ (생략) <u><신설></u>	第254條(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狀)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 「형사소송법」 제254조¹⁾는 공소를 제기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1)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²⁾ 제2항은 공소장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공소 제기를 위하여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할 때 법관의 예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형사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³⁾

개정안은 형사소송규칙에 있는 공소장일본주의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려는 내용으로, 공소장일본주의의 규범적 효력을 강화하여 법원의 예단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음.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은 공소장에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 취지와 맞지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영장과 같은 일정한 서류를 제외할 필요성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63

2)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재상, 조균석, 『형사소송법』, 박영사(2017년), 398면